

#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684호
- 발 의 자 : 박상구 의원(찬성자 12명)
- 발의일자 : 2019년 5월 24일
- 회부일자 : 2019년 5월 30일

### 2. 제안이유

- 언어는 인식과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바, 시정의 핵심 가치는 시민 중심이 되어야 함. 따라서 “공급자”에 해당하는 서울시가 아니라 “수요자”인 시민 중심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것임.

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문서와 누리집 등, 시의 행정용어에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공문서 등의 언어사용에서 수요자인 시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음. 이에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, 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향상시키고, 국어 사용 조례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잘못된 문장과 어문규범 및 상위법과 다른 내용을 수정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은 원칙적으로 시민 중심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함(안 제13조제2항제4호 신설).

나.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어문규범 및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항을 수정함(안 제2조제3호~제4호, 제3조, 제4조, 제8조의2제1호, 제13조제1항 단서, 제2항제1호, 제15조제1항, 제16조제2항, 제3항, 제17조제1항, 제20조제3항).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어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안 개요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의 원칙으로 공급자가 아닌 시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 및 시민의 행정 만족도 제고와 잘못된 문장과 어문규범 및 상위 법과 다른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세부사항

- 공공언어는 공공기관으로서 가지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언어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시민들에게 정책 혹은 사업 등을 소개하고 설명할 때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공공기관과 시민 사이에 소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공공언어에서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,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.
- 서울시는 행정문서에 이해하기 쉬운 한글을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, 한글전문가를 채용하여 행정문서를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도록 하자는 시장 요청사항('14.11.4.)과 조례 제16조(실태 조사 및 평가)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해마다 서울시 공공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.
- 서울시 공공언어 사용 실태조사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, 사업소, 투자·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공문, 보도자료, 리플릿, 안내판, 포스터, 소책자, 서울시청 홈페이지, 웹진 등 공공언어로서의 정

확성, 간결한 문장 구성, 맞춤법과 외래어표기법 등의 어문규정을 준수하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,

서울시 국어 정책관련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서울시 전반에 걸쳐 올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.

또한 ‘서울시 공공언어 사용 실태조사’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,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한글표기 위반업체에 과태료 부과를 권고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공언어 개선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고 조사 대상도 광범위하여 단기간에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연차별로 면밀한 계획아래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임.

- 동 조례에서 사용되는 일부 단어와 문구를 상위법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정비하는 것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순화하고 명확하게 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.
- 다만, 서울시 산하기관(붙임1) 중 기관형태를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1)와 제76조2)에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단은 법률용어상 “지방공기업”이나 「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2조(정의)에 따르면 ‘투자기관이라 함은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’

---

1) 제49조(설립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2) 제76조(설립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

라고 명시되어 있고, 출자 기관은 시의 자본금 출자비율이 10% 이상인 (주)서울관광마케팅이 해당되나 청산('19년 7월)을 앞두고 있으므로 안 제2조의제4호와 안 제17조제1항 중 “투자 · 출자 · 출연기관”을 현행대로 “투자 · 출연기관”으로 수정하고,

**<안 제2조의제4호 및 안 제17조제1항 수정의견>**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투자 · 출연기관	투자 · 출자 · 출연기관	투자 · 출연기관

- 안 제8조의2 중 “임기만료 전”을 “임기가 끝나기 전”으로, 안 제17조제1항의 “부서 장”을 “부서장”으로 추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.

**<그 외 수정의견>**

조례 조항	현행 및 개정안	수정의견
안 제8조의2	임기만료 전	임기가 끝나기 전
안 제17조제1항	부서 장	부서장

- 서울시는 공문서 등 공공언어 사용에 있어 올바른 한글 사용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혼돈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언어 사용을 오·남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바, 관련 실태조사 결과들이 실질적으로 공문서에 수정,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
<붙임 1. 서울시 산하기관 목록>

연번	기관형태	재단명
1	투자기관 (5개)	서울교통공사
2		서울시설공단
3		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
4		서울주택도시공사
5		서울에너지공사
6	출연기관 (18개)	서울의료원
7		서울연구원
8		서울산업진흥원
9		서울신용보증재단
10		세종문화회관
11		서울여성가족재단
12		서울시복지재단
13		서울문화재단
14		서울시립교향악단
15		서울디자인재단
16		서울장학재단
17		평생교육진흥원
18		서울관광재단
19		서울시50플러스재단
20		서울디지털재단
21		120다산콜센터
22		공공보건의료재단
23		서울기술연구원